

질문 · 서면답변서

질문의원명	강석주 의원	제70회평창군의의회(임시회)제2차예결특위
질문대상자	평 창 군 수	

〈질문요지〉

- 한시적생계보호비지원 책정절차 및 기준내역

〈답변요지〉

1. 지원대상 : 실직, 파산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려워 자활 가능시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

2. 책정절차
 - ① 지원대상자 신청접수(읍.면) → ② 소득, 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 → ③ 군 진달 → ④ 실태조사 보완 → 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→ ⑥ 신청자 및 해당 읍면에 결정사항 통보 → ⑦ 해당읍면 명부정리 및 보호내용 안내

3. 구비서류
 - 소득관련서류 : 월급명세서, 고용·임금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
 - 재산관련서류 : 전, 월세계약서, 무료임대확인서 등.

4. 선정기준
 - 소득 : 23만원이하/ 1인.월 재산 : 4,400만원 이하/가구당
 -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.
 - ① 직계혈족 및 배우자, ②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
 - *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단지 거주를 위한 것이고 소득의 중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음.
 - 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보호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, 재산 조사 생략.

5. 보호내역

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

- 생계비

가구원수(인)	1	2	3	4	5	6
지원금액(원)	79,000	150,000	210,000	250,000	290,000	320,000

- 명절위로비 (년2회 : 설, 추석) 가구당 51,860원
- 월동대책비 (년1회 : 10.20) 1인당 94,760원
- 의료보호 : 외래진료, 입원료 전액 무료
- 교육보호 ; 중.고생을 대상으로 입학금, 수업료 전액 지원
- 해산보호 : 출산시 180천원 지급
- 장 제 비 : 사망시 500천원 지급

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

- 동절기 생계비(6개월) : 상반기 1월-3월, 하반기 10월-12월
* 지급기준은 한시 생계보호자와 동일
- 의료보호 : 외래진료 방문당 1,500원, 입원료 20% 본인부담.
- 교육보호 ; 중.고생을 대상으로 입학금, 수업료 전액 지원
- 해산보호 : 출산시 180천원 지급
- 장 제 비 : 사망시 200천원 지급

공통사항

- 개인균등할 주민세(5,000원) 비과세
- T.V 수신료(2,500원) 면제
- 주민등록 업무 수수료 및 과태료 면제
-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: 가구당 월 20ℓ 짜리 3매
- 복지전화 무료설치 및 요금 감면
설치료 전액무료, 기본사용료(2,500원), 150도수(6,000원)통화료 면제